

부가가치세 <input type="checkbox"/>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확정 <input type="checkbox"/>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										처리기간
관리번호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 신고기간 <input type="text"/> 년 <input type="text"/> 기(월 일 ~ 월 일)										주 시
사 업 자	상 호	성 명 (대표자명)			사업자등록번호					
	사업장소재지				주민등록번호					
	주 소				전화번호		(사업장) (주소지)			
	업 태	종목	총괄납부승인번호				개업연월일			. . .

사 업 장 명 세(확정신고시에만 기재)										
1. 기본사항(자·타가) ※ 확정신고시 음식, 숙박업 또는 서비스업 중 해당업종 사업자만 기재										
① 사 업 장		② 객실수	③ 탁자수	④ 의자수	⑤ 주차장	⑥ 종업원수		⑦ 차 량		⑧ 기타
대지	건 평 구조 규모					관리직	기 타	승용차	화물차	
평	평	개	개	개	유·무	명	명	대	대	
2. 기본경비(6월, 12월 기준) (단위 : 천원)										
⑨임 차 료		⑩전기·가스료	⑪수도료	⑫인건비	⑬기 타	⑭월기본경비계				
보증금	월 세									

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수 납 인
년 월 일							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수 수 료
세무서장 귀하							없 음
세무대리인	성 명		관리번호		전화번호		

- ※ 구비서류
1. 매출·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
 2. 영세율 첨부서류
 3.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
 4. 매입차별계산서합계표, 영수증·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
 5. 대손세액공제신고서
 6.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
 7. 사업자등록증(폐업신고시 첨부)
 8.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(환급세액) 신고명세서
 9. 기타 서류

접 수 증 (부가가치세 <input type="checkbox"/> 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)										
상 호		성 명			첨 부 서 류					
					1. 매출·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 () 2. 영세율 첨부서류 () 3.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() 4. 매입차별계산서합계표, 영수증·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() 5. 대손세액공제신고서 () 6.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() 7. 사업자등록증(폐업신고시 첨부) () 8.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(환급세액) 신고명세서 () 9. 기타서류 ()					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접 수 자					

구		신	고	내	용		
분		금	액	세	액	세	
과 세 표 준 및 영 세 율	과세	세금계산서	①		100		
	세	기 타	②		100		
	영	세금계산서	③		100		
	세	기 타	④		100		
매 출 세 액	예정 신고 누락분		⑤				
	대손세액가감		⑥				
	합 계		⑦		㉑		
매 입 세 액	세계	일반매입	⑧				
	산	고정자산매입	⑨				
	금	기타 공제매입세액	⑩				
	서	합 계(⑧+⑨+⑩)	⑪				
	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		⑫				
	차 감 계 (⑪ - ⑫)		⑬			㉒	
	납부(환급)세액(매출세액 ㉑ - 매입세액 ㉒)					㉓	
경 감 · 공 제 세 액	택시경감세액		⑭				
	제조업등경감세액		⑮				
	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·신용카드매출전표발 행공제		⑯			4쪽참	
	예정 신고기간 고지세액		⑰				
	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		⑱				
	합 계		⑲			㉔	
가 산 세 계		⑳			㉕		
차가감 납부할 세액(환급받을 세액)(㉓-㉔+㉕)					㉖		

과세표준명세		종	목
업	태	금	액
업종코드			
⑳			
㉑			
㉒			
㉓			
㉔			
㉕			
㉖ 기 타			
㉗ 합 계			

국세환급금 계좌신고	
거래은행	은행 지점
계좌번호	
폐업신고	
개업연월일	
폐업사유	

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.

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명 세					
구	분	금	액	세 율	세 액
과세	세금계산서	㉘		100	
	기 타	㉙		100	
영세율	세금계산서	㉚		100	
	기 타	㉛		100	
합		㉜			

⑩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					
구	분	금	액	세 율	세 액
신용카드매출전표·금전등록기 이면확인분		㉝			
의 제 매 입 세 액		㉞		100	
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		㉟		100	
재 고 매 입 세 액		㊱			
면 제 대 손 세 액		㊲			
합	계	㊳			

⑫ 공 제 받 지 못 할 매 입 세 액 명 세				
구	분	금	액	세 액
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		㉜		
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		㉝		
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		㉞		
합	계	㉟		

⑮ 제 조 업 등 경 감 세 액 명 세						
구	분	㉑ 납부세액	㉒ 납 부 세 액 한 도			㉓ 경감세액 (㉑ - ㉒)
			㉔ 공급대가	㉕ 부가율	㉖ 세 율	
제조업·광업	㉘				100	
도 매 업	㉙				100	
합	계	㉚				

⑳ 가 산 세 명 세					
구	분	금	액	세 율	세 액
사업자미등록	㉛			5쪽 참조	
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	㉜			5쪽 참조	
신 고·납 부 불 성 실	㉝			100	
영세율·과세표준 신고불성실	㉞			100	
합	계	㉟			

면세수입금액	업 태	종 목	코드번호					금 액
	㉑							
	㉒							
	㉓	계						

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(일반과세사용)

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.

-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
 -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2쪽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.
- (1쪽)

사업자란 |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사업장명세란 | 사업장명세란은 매기별 확정신고서 음식·숙박업 또는 서비스업 중 현금수입업소 (예:예식장, 실내골프장, 수영장, 볼링장 헬스클럽 등)를 영위하는 자가 기재합니다.

(2쪽)

신고내용란 | ①~⑤ : 해당 신고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을 기재합니다.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부분 및 월별 조기 환급 신고한 부분을 제외하고, ⑤예정신고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하며, 3쪽 <33>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 합니다.

⑥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,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)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(△)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. 해당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⑧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, 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하되 ⑨기재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

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분을 기재합니다.

⑩ 금전등록기·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 확인 매입세액·의제매입세액·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·재고매입세액·변제대손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, 3쪽 <38>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.

⑫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의 사업자만 기재하며, 3쪽 <42>합계란의 금액과과세액을 기재합니다.

⑭ 일반택시사업자만 기재하며, 2쪽 ㉔란의 2분의 1을 기재합니다.

⑮ 제조업·광업·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일반과세사업자만 기재하며, 3쪽 <45>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
⑯ 신용카드가맹사업자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제도적용대상사업자가 기재합니다.

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공제세액: 1/100

└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: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3 참조

※ 다음의 경우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

·POS신용카드·공공기관매입이 중복되는 경우

·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납부세액경감제도가 중복되는 경우

<20> 신고한 내용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, 3쪽 <50>합계란의 금액과세액을 기재 합니다.

과세표준명세란 | <22>~<27> : ⑦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<27>란의 합계의 금액은 ⑦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

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 | <21>란에 "환급받을 세액"이 발생한 사업자만 기재합니다. 다만, 예정 신고시 재고과다 등으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재 하지 아니합니다.

폐업신고란 |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.

(3쪽)

⑤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| <28> ~ <31> :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2쪽 ⑤란에 예정신고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명세를 기재합니다.

<33> ~ <36> :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.

⑩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| <37> :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,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.

<39> :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
⑫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란 |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,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
<40> :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.

<41> :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, 관련된 대손처분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.

<43> <44> :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.

⑪제조업등 경감세액 명세란 | ㉗ 납부세액 : 과세기간(제1기, 제2기)별로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.

㉘ 공급대가 : 과세기간(제1기, 제2기)별로 과세표준에 110/10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
㉙ 부가율 :

- 제조업·광업

·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: 28%

·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고 5천400만원 이하인 사업자 : 32%

·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5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: 50%

- 도매업

·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: 28%

·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: 32%

㉚ 한도액 : ㉘공급대가에 ㉙부가율과 ㉚세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
㉛ 경감세액 : (㉗납부세액 - ㉚한도액)을 말하며, 납부세액이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0을 기재합니다.

<20>가산세 명세란 |

<46> 미등록 가산세율 : 공급가액에 적용
- 개인 $\frac{1}{100}$, 법인 $\frac{2}{100}$

<47>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(지연제출)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 : 공급가액에 적용

- 개인 $\frac{1}{100}$ (지연제출), 법인 $\frac{5}{100}$ (지연제출)
 $\frac{2}{1,000}$, $\frac{10}{100}$ (지연제출)

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·기재불성실 가산세율 : 공급가액에 적용

- 개인 $\frac{1}{100}$, 법인 $\frac{2}{100}$

<48> : 신고·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세액(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(미달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납부한 세액)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면세수입금액란 | <51> ~ <53> :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기재합니다.